

건설기계를
직접 운전하는

특수형태근로종사자



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

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시적으로 한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하되,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고용하지 않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



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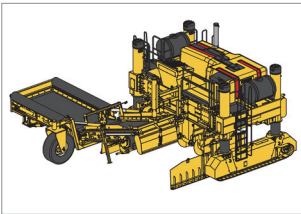
콘크리트 살포기

콘크리트 피니셔와 유사하나 단순한 포설장치만 장착한 콘크리트 포장기계로, 규격은 시공할 수 있는 표준너비(m)로 표시하고 신장(伸長)이 가능한 경우 최소와 최대너비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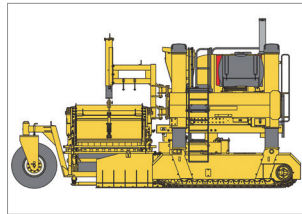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



콘크리트 살포기 종류 및 작업 방법



정면도 및 사진



측면도 및 사진



오거(Auger)



컨베이어



콘크리트 살포기 및 콘크리트 피니셔 조합작업



- 1 믹서트럭이나 덤프트럭에서 생콘크리트를 콘크리트 살포기의 측면 컨베이어에 투입
- 2 컨베이어 벨트가 콘크리트를 중앙으로 이송하고, 살포기가 전진하면서 오거장치가 노면에 회전하며 좌, 우 가이드에 맞게 콘크리트 포설
- 3 뒤따르는 콘크리트 피니셔가 포설된 노면을 정밀하게 다듬어 완전한 형태를 형성



콘크리트 살포기 작업 시 주의사항

작업 전

- 1 반드시 조종하려고 하는 콘크리트 살포기의 성능·제원을 사전에 확인
- 2 작업 시작 전에는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
- 3 안전장치가 불량한 경우 조종을 중단하고, 즉시 정비 등의 조치 실시

작업 중

- 1 시야가 사각지대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는 유도자의 작업 신호 준수
- 2 살포기는 서서히 움직이며 급격한 시동·제동을 하지 않도록 조작
- 3 원동기 및 작업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
- 4 살포 작업 중 주행트랙의 방해물을 타고 넘는 것을 금지하며, 곡선 도로에서는 균일한 살포를 위해 서행 운전할 것

작업 후

- 1 오거(auger) 및 가이드 등 컨베이어벨트 등에 콘크리트가 굳기 전 장비를 고압 세척
- 2 모든 제어장치는 중립 위치를 확인하고 조종석 캐노피를 접어 수납한 후 조종키를 제거



필수 안전보건교육



노무제공 시 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)

- 대상** ·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,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
- 방법** · 작업 배치 전,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
※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
- 시간** · 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* 또는 간헐적 작업**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)
*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**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- 면제** · **교육시간 1/2 면제**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
· **전체면제**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
- 내용** ·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·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·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
·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



특별안전보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)

- 대상** ·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
·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
·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
- 방법** · 작업 배치 전
- 시간** · 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,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
· 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* 또는 간헐적 작업**인 경우)
*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**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- 면제** · **교육시간 1/2 면제**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
· **전체면제**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
- 내용** · 공통사항 및 각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

※ 건설기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술기준

- 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~ 제40조, 제86조, 제89조, 제91조 ~ 제93조, 제98조, 제99조, 제196조 ~ 제206조
- ⚡ 공단 기술지원규정(KOSHA GUIDE) C-48-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